

부경고용 : 제56호

2019. 4. 1.

수 신 : 대표이사

참 조 : 인사·노무·총무 담당 부서장

제 목 : **NCS (국가직무표준) 기업활용 무료컨설팅 활용 안내**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회에서는 지역의 중견·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『20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. 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현장 직무 중심의 NCS기반 채용프로세스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- 다 음 -

가. 사 업 명 : 2019 NCS 기업활용 컨설팅

나. 회신방법 : 이메일

다. 문 의 : 김정원 책임위원 ☎ 070-4412-4330

E-mail : bsef0456@naver.com



붙 임 : 사업 협약서 1부. 끝.

부 산 경 영 자 총 협
회 장 심 상



『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』 협약서

부산경영자총협회(이하, “컨설팅 운영기관” 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, “참여기업” 이라 한다)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NCS 기업활용 컨설팅」 사업(이하 “컨설팅사업” 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컨설팅사업에 관한 컨설팅 운영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관의 역할) 컨설팅 운영기관은 관련 법규 및 ‘컨설팅사업’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.

1. 참여기업체 대상 NCS 및 컨설팅 사업 설명
2. 참여기업 컨설팅 실시를 위한 전문가(컨설턴트) 모집·구성
3. 참여기업 컨설팅 추진관련 일정계획 수립 및 관리
4. 참여기업 컨설팅 전 과정의 책임관리 및 컨설팅 팀 지원
5. 참여기업 컨설팅 수행 및 산출물 도출
6. 그 밖에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

제3조(기업의 역할) 기업은 컨설팅 과제 수행 시 필요한 인력지원 및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‘운영기관’ 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컨설팅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되며 ‘운영기관’ 의 성공적인 컨설팅 추진 및 NCS 컨설팅 내용을 기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성실의무) 컨설팅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컨설팅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컨설팅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컨설팅사업 종료 이전에도 참여기업이 동 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기타) 상기에 계약하지 않는 사항은 건별로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거쳐도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.

2019년 4월 일

【컨설팅 운영기관】

【참여기업】

부산경영자총협회

주 소 : 부산시 동구 조방로 14, 11층
1102호 (범일동)

주 소 :

대표자 : 회 장 심 상 균 (인)

대표자 : 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원장 귀하